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23
----------	-------

발의연월일 : 2026. 8. 10.

발 의 자 : 김대식 · 김선교 · 김태규
김상훈 · 김승수 · 안철수
이달희 · 고동진 · 서지영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톱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이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잠정조치 또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 시 검사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므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접근금지 등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스톱킹 범죄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의 유형으로서 상담소,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및 스톱킹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명령 등을 신설하며, 접근금지 거리를 기존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상향하고, 기본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하며,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스톱킹범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법경찰관이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나.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다. 잠정조치 유형으로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의료기관 위탁 및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라.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하고, 구치소 등 유치의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소 상담위탁 등 그 밖의 잠정조치는 3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 마. 잠정조치로서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의 대상이 되는 상담소 및 의료기관등의 기준, 위탁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 및

비용부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2 신설).

바.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시의 처벌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00미터”를 “300미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검사에게”를 “지방법원 판사에게”로,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를 “청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을 “지방법원”으로, “제2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를 “법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 또는 그 신청을”을 “청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을 “청구”로, “신청을”을 “청구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100미터”를 “300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를 “제1항에”로,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을 “3개월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호 및 제3호의2에”를 “제3호, 제3호의2,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에”로, “대하여”를 “대하여는”으로, “범위에서 연장할”을 “범위에서,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각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6. 의료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의 위탁

7. 스토킹 행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법원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원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의료기관등에 스토킹행위자를 위탁을 하는 때에는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항을 그 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상담소 및 의료기관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제7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부담) 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탁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스토킹 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를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스토킹행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 ----- ----- ----- ----- ----- ----- ----- ----- ----- -----.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u>100미터</u> 이내의 접근 금지	1. ----- ----- <u>300미터</u>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u>검사에게</u>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u>지방법원 판사에게</u>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 ----- <u>지방법원 판사에게</u> ----- ----- <u>청구하여야</u> -----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생략)

----- .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제1항에-----

-----.

④ -----지방법원-----

-----제1항의-----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
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
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
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
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
 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
 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생략)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에

 -----.

② -----

 -----청구를

 -----.

③ -----
청구-----
 -----청구를-----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이하 “삼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⑥ (생략)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

1. (현행과 같음)

2. _____

 300㎖ 터 _____

3. 4. (현행과 같음)

5. 상담소에 의 상담위탁

6. 의료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의 위탁

7. 스톡킹 행위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3개월을-----

-----제3호, 제3호의2, 제5호
부터 제7호까지에-----

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대하여는-----
-----범위
에서,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각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의 장은 그 결과보고
서를 법원과 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⑨ 법원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의료기관등에 스토킹 행위자를
위탁을 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스토킹 행위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
하여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항을 그 의료기
관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
탁의 대상이 되는 상담소 및
의료기관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제7호에 따른 교육 프로
그램의 내용과 실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생략)

2.·3. (생략)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제10조의2(비용의 부담) 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탁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스토킹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벌칙) ① -----

-----.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④ (생략)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